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체공휴일 지정 및 공표 시한(한달 전) 명시〉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9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17.
3. 회부연월일 : 2025.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체공휴일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체공휴일 지정 시기의 구체적 기준이 없어 국민과 기업이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체공휴일을 해당 공휴일 최소 한 달 전에 공표하도록 하여 공휴일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함(안 제3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체공휴일을 한달 전에 지정·공표하도록 그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대체공휴일) ①·② (생략) <u><신설></u>	제3조(대체공휴일)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제1항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공휴일 최소 1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u>

2. 검토의견

현행법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¹⁾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은 국경일 중 공휴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하도록 하는 등 대체공휴일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제3조),²⁾ 대체공휴일은 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공휴일 해당 여부와 일자가 정해지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으로도 예측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공휴일 한달 전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공휴일은 현행 법령상 요건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정부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지정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인 바, 그 입법 취지는 현행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³⁾ “임시 공휴일”을 최소 한달 전에 지정·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이와 같이 볼 때, 임시공휴일을 최소 한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사전에 알 수 있게 하는 경우 국민 개개인의 여가 일정 수립 및 기업의 업무일정 변경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내수진작 등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동 개정안의 대표발의 의원실에서도 법률안의 취지를 현행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을 최소 한달 전에 지정·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실효성있게 달성하고 원활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등 공휴일 제도의 운영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임시공휴일은 임시공휴일 지정의 상징성,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 국민의 휴식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공휴일 한달 전까지라는 시한이 이와 같은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요건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에 따른 임시공휴일 지정 및 공포 시한 규정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를 훈시규정으로 볼 경우에는 개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효력규정으로 볼 경우에는 시한을 넘겨 임시공휴일을 공포한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이 법규범으로서 가지는 효력과 공휴일제도 운영에 미치는 입법적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현재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법령 규정에 따라 예측가능하도록 규율되고 있는 바, 개정안의 입법 실익은 크지 않다는 입장임.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의 경우 최근 10년간 최소 2일에서 최대 55일 전에 공고되어 평균적으로 23일 전에 지정 공고가 이루어졌으

며,⁵⁾ 임시공휴일 지정을 최소 1개월 전까지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임시공휴일의 경우 국가적인 행사나 국민휴식권 보장 등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경제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박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정 기한을 정해 사전에 공표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42

5) 최근 10년간 임시공휴일 지정 공고일

- '15년 광복절 전일 임시공휴일(8.14.) : 8.12. (D-2)	※ 광복 70주년 경축 및 내수 진작
- '16년 어린이날 다음날 임시공휴일(5.6.) : 4.29. (D-7)	※ 관광 활성화 등 내수 진작
- '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일(5.9.) : 3.15. (D-55)	※ 국민의 선거권 행사 편의 제공
- '17년 개천절 전일 임시공휴일(10.2.) : 9.6. (D-26)	※ 국내 관광 활성화 및 내수 진작
- '20년 광복절 다다음날 임시공휴일(8.17.) : 7.22. (D-26)	※ 광복 75주년 경축 및 내수 진작
- '23년 개천절 전일 임시공휴일(10.2.) : 9.6. (D-26)	※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
- '24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10.1.) : 9.4. (D-27)	※ 안보의식 고취, 국군 사기진작
- '25년 설연휴 전날 임시공휴일(1.27.) : 1.15. (D-11)	※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회복 뒷받침